
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18일

진도군수

■ 공고기간 : 2019. 3. 18. ~ 3. 23.

■ 교섭요구 노동조합

노동조합명칭	대표자	교섭요구일자	조합원수	비 고
공공연대노동조합	이성일	2019. 3. 7.	178명	

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

- 위 공고내용 중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진도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행정과 행정담당(☎ 061-540-322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